

안암 글로벌 하우스 대학원생 생활 수칙

2013. 07. 16 제정

<안암학사 관리운영팀>

제1조(목적)①이 수칙은 대학원생이 입사시 서약한 서약서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내생활 및 예절)① 대학원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, 특히 사내에서의 폭언, 폭행, 흡연, 도박 및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3조 (호실배정)호실의 배정은 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운영팀에서 행하며, 일단 배정된 방은 대학원생들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. (다만, 부득이한 경우 사감보의 건의에 의하여 안암학사 관리운영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으며, 단체입사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호실배정을 한다.)

제4조 (공용물 사용) 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 이동을 금한다.

③ 안암 글로벌 하우스 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열기구(전열기구, 난로, 취사기구)의 사용 및 보유를 금한다.(다만, PC(노트북), 헤어드라이기, 충전기, 스탠드는 사용가능함)

④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.

⑤ 카드키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5조 (보건 및 위생)①대학원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질병이 발병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경비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.

③대학원생은 입사 전 공동생활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소/종합병원/내과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④실내에서 일체의 개인적인 취사행위를 금한다.

제6조 (출입 및 외박)①외부인(타동사생 또는 이성)의 면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면회실(로비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면회시간은 17:00~21:00으로 제한한다.

②호실 내에는 외부인(타동사생 또는 이성)이 출입하거나 숙박시킬 수 없다.

(외부인을 출입 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사 사유가 됨)

③필요시 관계직원 및 사감보는 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④7일 이상의 장기 외박시에는 사감보 등 관리인(경비실)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시설물 사용 및 호실점검)① 기숙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② 필요시 관계직원 및 사감보는 사생의 허락없이 호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.

(예 : 응급상황, 냉/난방, 소독, 각종 보수 등)

-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, 사전 공지 후 출입



제8조 (금지행위 및 처분) 안암학사 기숙사 규정 및 사생수칙을 위반한 사생은 징계할 수 있다.(다만,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암학사 사생수칙을 따른다)

부칙

이 수칙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